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2156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 담당변호사 문경재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채

변 론 종 결 2024. 9. 25.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23. 4.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4. 10. 3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89,4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20,089,4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피고 B 및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35,149,4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35,149,4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의 유류분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06621)의 감정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3. 27. 피고 C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14,500,000원을 차용하였다. 위 차용 당시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C의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조정합의시 돈수령후, 또는 확정판결시 돈수령후 즉시 지급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 C은 2014. 8. 28.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6. 30.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2033060)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C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1,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2022. 12. 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피고 D(피고 B 및 피고 C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은 백지인 상태에서 피고 B이 서명날인하였고 그 후 제목 등이 보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14,500,000원 청구부분

피고 C이 유류분소송의 감정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4,5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실제로 14,500,000원을 수령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을 통하여 위 14,500,000원을 수령한 후 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4,5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참조).

이 사건 차용증에 “C의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조정합의시 돈수령후, 또는 확정판결시 돈수령후 즉시 지급하겠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을 부관으로 붙인 것으로서 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까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 C이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 C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유류분소송의 패소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C은,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15,060,000원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 B 및 피고 C이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기초사실 나.항 기재 송금액 11,1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06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5,06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4. 4. 9.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C의 새마을금고계좌로 합계 11,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송금액 외에 4,040,000원을 추가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이 사용하는 계좌인 사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로 2019. 1. 9. 200,000원(같은 날 출금액 200,800원 중 800원은 수수료로 보인다), 2019. 9. 17. 50,000원, 2019. 10. 18. 50,000원 및 2021. 2. 8. 4,000,000원 합계 4,3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11,1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6,800,000원(= 11,100,000원 - 4,3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 B은 ① 2021. 2.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4,000,000원을 변제하면서 모든 채무를

정산하였다거나, ② 자신이 원고에게 대여한 13,900,000원 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정산약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B이 원고에게 13,9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C은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원고에게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4. 4. 20.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 12. 20. 자신의 아들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빌라를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D은, 피고 C 및 피고 D은 이 사건 빌라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피고 D이 피고 C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 D의 악의에 관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이 사건 빌라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대신 가액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D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2024. 3. 26.자 피고들 준비서면 제1면 참조),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2023. 4. 1. 기준 채권액 20,089,452원[= 14,500,000원 × (7 + 259일/365일) × 5%, 원 미만 버림]의 한도 내에서의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20,089,4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22. 12.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089,4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20,089,4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

별지

1) 사건명은 ‘약정금’으로 표시되어 있다.